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7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이탄희·고용진·김성주

맹성규・위성곤・윤미향

이용빈 · 임호선 · 정일영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하 "기대출자"라 한다)에게 이자 부담이 낮은 저금리로 전환 시켜주는 '전환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1학기에 시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평균대출금리가 5.7%(고정금리)임.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금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게 되어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 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등). 법률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혂 개 정 아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 (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 ----2012년 12월 31일까 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지 받은 기대출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법률 제1708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제2조(유효기간)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